

자영업닥터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성공적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전문교육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주는 『자영업닥터제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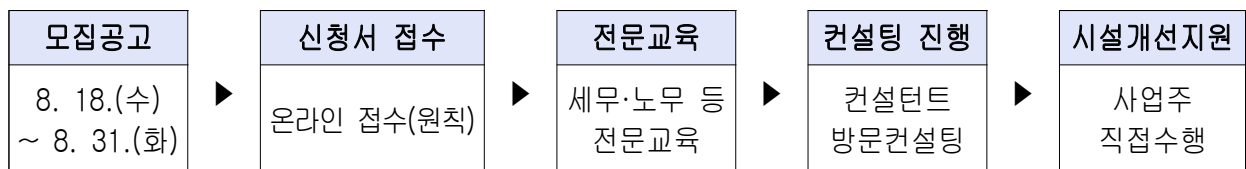
2021년 8월 18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①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1. 8월 ~ 2022. 2월
- (지원대상) 대전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300개 업체
-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붙임-3」 참고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1일 3시간 내외), 총 4회
 - 사전진단 : 대상업소 현상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기술, 브랜딩, 판로마케팅, 법률지원, 점포개선 등
 - (전문가 교육) 세무·노무, 금융 전문분야 프로그램 운영
 - (시설개선지원) 점포환경개선 등 업체별 최대 300만원 지원

② (지원절차)



2. 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 공고일 이전부터 대전 소재 사업장 유지한 자

-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참고

② (예비창업자) 공고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② (지원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대상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 공정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중인 사업자
- 2018년~2020년 자영업닥터제(소상공인 멘토하우스) 지원기업 중 시설개선자금 수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 * 컨설팅 지원만 수혜받은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 2015년~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지원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8. 18.(수) ~ 8. 31.(화) 18:00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dc.djbea.or.kr)

② 오프라인 :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방문

*접수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엑스포 오피스텔 6층 604호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③ 주민등록등본
해당시	④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⑥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0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0년도) - 2021년도 신규창업자 (아래 서류 중 3종)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① 신용카드 매출자료 (국세청 홈택스) ②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div> ※ 전년도(1년)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12로 계산 ※ 조회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1. 7월까지 내역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인 예비창업자가 신청가능하며 지원항목별 지원제외 대상 또는 지원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접수자는 제출기간 내에 모든서류가 정상 접수시 서류검토 대상으로 접수되며 일부서류 미비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합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문 의)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 042-488-4809)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엑스포 오피스텔 6층 604호
- (접수시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붙 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1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3. 자영업닥터제 세부 지원내용 1부.
4. 자영업닥터제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등 1부. 끝.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 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해당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① 종합 컨설팅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종합 컨설팅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별 명장·기능장 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연계지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예비창업자	- 업체당 컨설팅 최대 4회 1일 3시간 내외	- 자부담 없음
컨설팅 지원분야	①상권 및 입지분석 ②사업타당성 분석 ③경영진단 ④마케팅 ⑤점포운영 ⑥고객서비스 ⑦기술전수 ⑧세무, 노무, 기타 등			

- (지원내용) 경영노하우, 메뉴개발, 상품진열, 마케팅 방안 등 컨설팅
 - 사전진단 : 대상업소 현장 방문, 실태 파악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경영컨설팅 :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전수 :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지원
 - 분야별개선 : 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친절교육 등 업소운영에 관한 종합컨설팅 등
 - 연계지원 : 분야별 전문교육 또는 시설개선자금 연계지원
- (지원조건) 업체당 컨설팅 최대 4회(사전진단 포함)
- (지원방법) 1일 3시간 내외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 제공
- (지원업종)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② [참고] 분야별 교육지원 *컨설팅지원 대상선정 후 별도 신청접수 예정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분야별 전문교육	▶점포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금융 등 전문교육 제공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예비창업자	- 총 6가지 교육과정 구성	- 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점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교육
*세무과정, 인사노무과정, 금융분야 등 점포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구성
- (지원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진행
- (자 부 담) 없음 / 교육교재 별도 제공예정
- (교육과정) 세부교육과정은 지원대상 선정 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

③ [참고] 시설개선지원 *컨설팅지원 대상선정 후 별도 신청접수 예정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시설 개선 지원	▶ 위생관리비지원 ▶ 안전관리비지원 ▶ 홍보(광고)비지원 ▶ 점포환경개선경비지원 ▶ POS경비지원 ▶ 위생방역 시설비지원	- 전문교육 1회이상 및 컨설팅 2회이상 수행 업체 중 컨설턴트의 신청 및 평가선정	- 소요금액의 최대 3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지원대상) 분야별 교육 1회이상 받고 컨설팅 2회이상 진행한
업체 중 컨설턴트(컨설팅사)에 추천 및 신청에 의해 지원
*지원 대상 중 2018 ~ 2020년 시설개선자금, 2015 ~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을 수혜
받지 않은 대상
- (지원방법) 참여대상 중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컨설턴트(컨설팅사)에 추천
및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매월 평가하여 선정
*대전시장 표창,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 참여자 우대지원

○ (지원절차)

신청 및 심사	신청서 제출 (컨설팅사·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컨설팅사)가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 업체 추천 · 사업주-컨설턴트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 - 시설개선 내용을 명확히 기재
	지원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개최, 적격심사 후 컨설팅사에 결과안내 - 컨설팅사에서 별도로 사업주에게 선정결과 안내
시설 개 진	과제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안내 후 지원대상은 시설개선 추진 (과제수행 변경 불가)
지원 금 지 급	비용 지급 (사업주→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 계좌이체입금 (현금 지급·카드결제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지급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현금 지급 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 포함) 제출 · 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진흥원→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 (현금지급, 카드결제 인정불가)
 - * 단, 현금결제가 불가피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로 검토가능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불가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
-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대전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지원내용) 단위사업 지원범위 내 최대 300만원 지원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위생관리비 지원	· 소독·청소용역 비용, 방역소독 비용 등	소요금액의 최대 3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안전관리비 지원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전단지 및 리플렛), 포장용기 등 ·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광고물(간판 등) 신규 제작 및 교체 -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필수 제출 · 외부 인테리어(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옥상수리 등) ·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POS경비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무인주문기(키오스크)·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위생방역 시설비 지원	·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등 · 코로나19 시설(발열체크기, 방역소독기 / 설치형) 비용 등	소요금액의 최대 1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한도액 내에서 중복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심의시 조정될 수 있음
- 2018년 ~ 2020년 시설개선지원 수혜자 또는 2015년 ~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지원 수혜자, 예비창업자 시설개선지원 제외
- 무점포 또는 업력 3개월 미만 사업자는 홍보(광고)비 사업만 지원 가능
 - * 시설개선자금 신청 당시 기준으로 무점포 여부 또는 업력 3개월 미만여부를 판단함
- 적격 심의 후 시설개선 내용 변경 불가 (변경시 재심의)
 - * 심의한 내역 중 일부를 포기하여 지원규모 축소시 심의 없이 변경신청서로 조정함
-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 필수 제출
 - * 제작업체의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진흥원은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음
 - * 홍보(광고)비 지원 외 단위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는 대전 소재업체에 한하며 진행함
 -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쇼케이스 포함),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업소용 싱크대, CCTV 및 POS기기 구매
- 신청 시 환경개선(공사, 구매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 이후에 시설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됨

붙임 4

자영업닥터제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등

[참고]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예	아니요
1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고용원 확인서류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1부 제출		
	(근로자가 있을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	매출액 확인서류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1부 제출		
	(2020년 이전창업,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0년 이전창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21년 창업, 3종) (월별)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월별 매출액 조회기간 : 창업월 ~ 2021. 7월까지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아니요) 1개 이상이 나오다면 신청이 불가			

○ (신청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대상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주민등록등본	
고용원 확인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대 보험 관련 기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참고] 제출서류 이미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처

기관	지사	주소	연락처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14	1577-1000
	대전서부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15-13	
	대전중부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	
근로복지 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588-0075
	유성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9	
국민연금 공단	서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1355
	북대전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동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출력일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발급일시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1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자격 취득 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2						





이 하 여 백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용]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용을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창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 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5)

▷ [산재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근로자 고용일을 뜻하며, 건설업 및 별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득일(고용일)'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사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사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 지사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 지사
--	--	--	---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사실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발급사실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기관	지사	주소	연락처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14	1577-1000
	대전서부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15-13	
	대전중부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1

발급번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2				
3				
4				
5				
6				
7				
8				
9				
10				

202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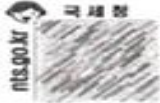


※ 이 확인서의 취득일·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사일·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제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
 로 사용시 공단에 별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처

기관	지사	주소	연락처
대전세무서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31	042-229-8200
	북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042-603-8200
	서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70	042-480-820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 1)

발급번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경영사업자 포함)			처리기간	
					즉 시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 태		종 목				
사 업 장		대전광역시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 / /	20 / /					
		아	라	어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20 년 월 일		세무서장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담당자						
연락처	042- -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발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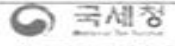
기관	지사	주소	연락처
대세무서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31	042-229-8200
	북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042-603-8200
	서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70	042-480-8200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1 / 1)

발급번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		종목	
사업장	대전광역시		
(단위 :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부터	까지		
20 / /	20 / /		
== 이하 금액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이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20년 월 일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세무서장	
담당자			
연락처	042- -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 서비스에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발급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 홈택스 및 가까운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